

2022년도 1-8차 [4월 개강반]

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

I. 사회복지현장실습이란

- 교육기관에서 배운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및 윤리, 지식 그리고 실천과정 및 기술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 사회복지사로서 교육·훈련하는 것으로 전공필수 과목입니다.

II. 개요

- 2022년 1-8차시 사회복지현장실습 학습반

- 개강일 : 2022년 04월 21일(목)
- 종강일 : 2022년 08월 03일(수)
- 성적보고 예정일 : 2022년 08월 17일(수)

- 실습인정기간

- 2022년 04월 25일(월) ~ 2022년 07월 17일(일) [약 12주간]
- ※ 구법 적용 대상자 : 총 120시간 이상 실습, [1일 4시간~8시간]
- ※ 개정법 적용 대상자 : 총 160시간 이상 실습, [1일 4시간~8시간]
- ※ 본인의 구법 및 개정법 적용여부 확인 필수
- ※ 식사 및 휴게시간 실습시간 불인정. 1일 4시간 미만 및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습시간 불인정.

□ 출석수업일정 (**개정법** 대상자만 해당)

구분	일자	시간	장소	교육시간	비고
1차 세미나	22.04.23(토)	1반: 09:00~11:00	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93 파고다타워 8층 801호	회차 당 2시간	
2차 세미나	22.07.23(토)	2반: 11:30~13:30			
		3반: 14:00~16:00			
3차 세미나	22.07.30(토)	4반: 16:30~18:30			

□ 온라인수업일정 (**구법** 대상자만 해당)

구분	일자	분반	수업방식	교육시간	비고
오리엔테이션	22.04.21(목) ~ 22.05.04(수)	5반	온라인 수강	강의 당 120여 분	
최종보고회	22.07.18(월) ~ 22.07.30(토)				

※ 해당 일정은 개강 이후 변경 불가

※ 실습 분반/지도교수 변경 불가

※ 160시간 개정법 대상자는 **출석수업 (세미나 3회) 참석 필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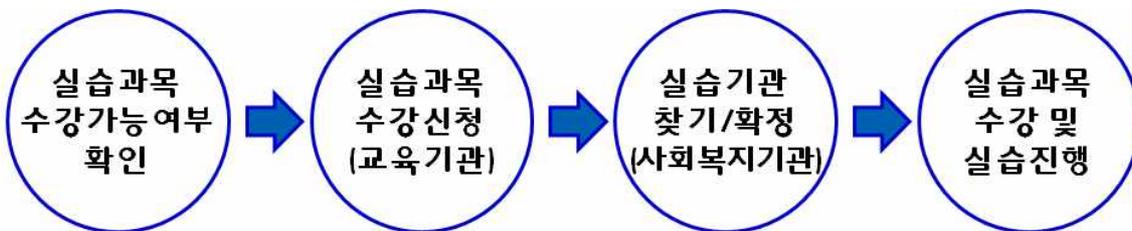
※ 120시간 구법 대상자는 **[오리엔테이션, 최종보고회] 참여 필수**

Ⅲ. 실습 관련 서류제출 일정

No.	제출시기	제출일자	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1	학습자모집 및 1차 서류제출	~04/19(화)	· 실습생프로파일 · 성적증명서 · 실습신청서 · 실습기관 현황카드 · 현장실습일정	등기	본 교육원 이수과목은 성적증명서 예외
2	실습진행	04/25(월) ~07/17(일)	· 실습진행&온라인수업 병행 · 지도교수 방문/전화지도		구법(120시간) 개정법(160시간) <u>실습진행</u> <u>시간에는</u> <u>온라인수업 수강</u> <u>불가</u>
3	과제제출	06/16(목) ~07/13(수)	· 기관분석보고서(1차 과제)	온라인	
4	실습보고서 제출 및 평가서류	~07/22(금)	· 실습결과보고서 제본 · 실습평가서 1부(기관작성) · 실습확인서 2부(기관작성) · 실습의뢰회신서 1부(기관작성)	등기	<u>제본 및 모든</u> <u>제출서류</u> <u>원본</u>

Ⅳ.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절차

□ 전체진행절차



□ 실습과목 수강가능 여부확인

- 학습설계 담당자를 통하여 실습대상이 맞는지 확인 필요
- 타 교육원의 이론과목 이수기록이 있는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

□ 실습과목 수강신청

○ 2022년 1-8차 「사회복지현장실습」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

□ 실습기관 찾기

구 분	내 용
실습기관	<p>※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이 공고됨에 따라 선정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</p> <p>· 본 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1-8차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안내 상단에 기관선정 현황 파일첨부</p>
실습지도자 (슈퍼바이저)	<p>· 기관 별 지도자 2명이상 상근</p> <p>·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<u>3년 이상</u>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<u>5년 이상</u>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</p> <p>·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함</p> <p>· 2021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</p>
실습시간	<p>· 현장실습시간은 <u>구법 적용 대상자 120시간 이상, 개정법 적용 대상자 160시간 이상</u>으로 한다.</p> <p>※ 본인의 구법 및 개정법 적용여부 확인 필수</p> <p>· 1일 이수시간은 <u>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</u> 이하로 제한함</p> <p>· 1주 <u>40시간 초과 불가</u></p> <p>· 「근로기준법」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</p> <p>· 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제외(단,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시간으로 인정)</p>
주의사항	<p>·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 : 실습동시 지도인원 5인 이내로 한다.</p> <p>▶ 상기사항 위반 시 실습 인정불가 및 실습취소</p> <p>· 동일 직장 내에서의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</p> <p>·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하지 않음</p> <p>· 자원봉사활동이나 단순 기관방문, 마을축제 방문 등은 현장실습에 포함되지 않음</p>

V. 메가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현장실습

□ 전체 일정

일 정	진행내용	참고사항 및 제출서류	비고
04/19(화)	수강신청 및 서류발송 (등기)	① 실습생 프로파일(자필서명 및 사진필수) ② 성적증명서(본 교육원 이수자는 제외) ③ 실습신청서 ④ 실습기관 현황카드 ⑤ 현장실습일정	04/19 도착분까지 취급
04/20(수)	학습자선정	· 제출 서류 검토 · 학습자 분반 및 지도교수 문자 발송	
04/21(목) ~05/04(수)	OT 수강	· 온라인 수강 *구법 대상자 미수강 시 미이수	구법 대상자 해당
04/23(토)	1차 세미나	· 04월 23일(토) · 장소 : 서울시 종로구 소재 * 세부일정 및 장소 추후공지 * 미출석 시 미이수 * 개강이후 분반변경 불가능	개정법 대상자 해당
04/25(월) ~07/17(일)	실습 진행	·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에 공문 발송 후, 학습자에게 실습 분반/실습지도교수 안내 · 주어진 실습기간 및 실습기관에서만 실습가능 * 실습신청 및 공문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 은 인정되지 않음 · 실습진행 시 실습지도교수가 실습현장방문 또는 전화 지도 · 실습기간동안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1차 과제 제출(실습기관분석보고서)	<u>실습진행 시간에는 온라인수업 수강 불가</u>
~07/22(금)	서류발송(등기)	① 사회복지현장실습보고서(1권) ② 실습평가서(1부) ③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2부) ④ 실습의뢰회신서(1부) *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함	07/22 도착분까지 취급
07/23(토)	2차 세미나	· 07월 23일(토) · 장소 : 서울시 종로구 소재 * 세부일정 및 장소 추후공지 * 미출석 시 미이수	개정법 대상자 해당

07/18(월) ~07/30(토)	최종보고회	· 온라인 수강 ※참여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등기 교부 ※구법 대상자 미수강 시 미이수	구법 대상자 해당
07/30(토)	3차 세미나	· 07월 30일(토) · 장소 : 서울시 종로구 소재 ※ 세부일정 및 장소 추후공지 ※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현장 교부 ※ 미출석 시 미이수 · 사회복지현장실습보고서 평가(2차 과제점수)	개정법 대상자 해당

□ 사회복지현장실습보고서

- 보고서는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
→ 개강 후 [강의실 공지사항]에서 양식 확인 가능
- 사회복지현장실습보고서는 워드타이핑 및 자필작성 가능
- 모든 양식은 필수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, 보고서 양식 외 추가로 양식을 첨부하여도 무방함
- 제공된 양식의 순서대로 작성 후 완성된 보고서는 본드제본 후 등기발송

□ 실습일지작성

- 「사회복지현장실습보고서」 양식 내의 ‘실습일지’는 실습을 진행한 일자에 따라 복사하여 사용하며, 매 시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함.
- 실습일지는 실습을 진행한 일자에 따라 매일 작성해야 하며,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습 받은 내용을 기입하며, 당일 일과 후 또는 익일 실습지도자에게 제출하여 슈퍼비전을 받도록 함.
- 실습일지에는 실습지도자(슈퍼바이저)의 의견 및 날인(또는 서명)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.

VI. 현장실습 주의사항

- 160시간 개정법 대상자 : 세미나 3회 참석 필수
120시간 구 법 대상자 : 오리엔테이션, 최종보고회 온라인 수강 필수
※1회라도 불참 시 이수 불가
-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
-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신청자는 사전에 실습장소 섭외 필수
- 실습과목은 사전 공지된 실습기간 내에 실습완료 및 보고서제출 등 2차서류를 제출해야 이수 가능
- 실습신청 및 공문발송처리 없이 임의로 진행한 실습은 인정 불가
- 개강 이후 분반 변경 불가
- 온라인강의 출석도 병행, 단, 퀴즈/토론/시험(중간,기말)평가는 진행되지 않음.
- 실습에 임하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온라인강의(1주차~14주차)를 수강 필수
[단, 실습 진행 시간 동안 강의수강 불가]
- 또한, 온라인 강의 출석률 80%미만일 경우에도 실습과목은 이수 불가.
- 학습자에게 교부되는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는 학습자가 보관하여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[서류보관에 유의]